

■ 「현금 IC 카드 가맹점약관」 개정대비표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 1 조 (목적) (생략)</p> <p>제 2 조(용어의 정의)</p> <p>① “현금IC카드(이하 "현금카드"라 합니다)”란 은행에서 예금계좌와 연결하여 발급하거나 현금인출 기능을 등록한 IC칩이 내장된 카드를 말하며, 모바일현금카드를 포함합니다.</p> <p>② “서비스”란 가맹점이 판매하거나 제공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대금을 가맹점 <u>IC단말기</u>에서 이용자가 현금카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p> <p>③ “모바일현금카드”란 이용자가 은행으로부터 스마트폰의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fy Module)칩 등에 전자적으로 발급받아 전용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말합니다.</p> <p>④ “가맹점”이란 <u>IC단말기</u>를 설치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후 은행에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업자의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p> <p>⑤ “<u>IC단말기</u>”란 가맹점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설치한 유•무선단말기(<u>PINPAD</u> 포함) 등을 말합니다.</p> <p>⑥ “이용자”란 현금카드를 가지고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p> <p>제 3 조 (현금카드의 범위)~제 4 조(입금계좌의 개설) (생략)</p> <p>제 5 조 (가맹점 준수사항)</p> <p>① ~ ② (생략)</p> <p>③ 가맹점은 <u>IC단말기</u>(핀패드 포함)의 보안장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p> <p>④ (생략)</p>	<p>제 1 조 (목적) (좌동)</p> <p>제2조(용어의 정의)</p> <p>① “현금IC카드(이하 "현금카드"라 합니다)”란 은행에서 예금계좌와 연결하여 발급하거나 현금인출 기능을 등록한 IC칩이 내장된 카드를 말하며, 모바일현금카드를 포함합니다.</p> <p>② “서비스”란 가맹점이 판매하거나 제공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대금을 가맹점 <u>결제단말기</u>에서 이용자가 현금카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p> <p>③ “모바일현금카드”란 이용자가 은행으로부터 스마트폰의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fy Module)칩 등에 전자적으로 발급받아 전용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말합니다.</p> <p>④ “가맹점”이란 <u>결제단말기</u>를 설치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후 은행에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업자의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p> <p>⑤ “<u>결제단말기</u>”란 가맹점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설치한 유•무선단말기(<u>핀패드</u> 포함) 등을 말합니다.</p> <p>⑥ “이용자”란 현금카드를 가지고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p> <p>제 3 조 (현금카드의 범위)~제 4 조(입금계좌의 개설) (좌동)</p> <p>제 5 조 (가맹점 준수사항)</p> <p>① ~ ② (좌동)</p> <p>③ 가맹점은 <u>결제단말기</u> (핀패드 포함)의 보안장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p> <p>④ (좌동)</p>	<p>‘IC단말기’를 결제단말기로 용어변경 (‘현금IC카드 이용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참조)</p> <p>‘IC단말기’를 결제단말기로 용어변경</p>

제 6 조 (은행 준수사항) (생략)

제 7 조 (거래방법)

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현금카드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현금카드의 명의인본인인지 여부, 현금카드의 진위 여부, 유효기간 경과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 당해 현금카드가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은행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IC단말기를 이용하여 거래를 요청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현금카드 발급은행에 신고한 비밀번호를 핀패드(모바일현금카드는 전용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 거래승인을 받습니다.

② (생략)

제 8 조 (거래의 취소)~제 13 조(이용자와의 분쟁) (생략)

제14조(변경통지)

㉠ 가맹점은 은행에 신고한 가맹점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은행에 서면 등 은행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이 제1항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은행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가맹점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삭제)

제 6 조 (은행 준수사항) (좌동)

제 7 조 (거래방법)

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현금카드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현금카드의 명의인본인인지 여부, 현금카드의 진위 여부, 유효기간 경과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 당해 현금카드가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은행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거래를 요청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현금카드 발급은행에 신고한 비밀번호를 핀패드(모바일현금카드는 전용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 거래승인을 받습니다. 다만, 은행과 소액거래(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하여 본인확인 생략 특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는 현금카드의 비밀번호 입력 생략이 가능합니다.

② (좌동)

제 8 조 (거래의 취소)~제 13 조(이용자와의 분쟁) (좌동)

제14조(변경통지)

가맹점은 은행에 신고한 가맹점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은행에 서면 등 은행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삭제)

「IC단말기」를 결제단말기로 용어변경

소액거래특약 사항 추가함
(「스마트금융 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 제24조 결제 거래 간소화 가맹점 정책 반영함)

도달간주조항 삭제함

제15조(계약의 해지 등)

- ① 은행은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별 통지하여 가맹점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가맹점 자격 정지 또는 계약 해지 적용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가맹점에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 1. 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가맹점의 불량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되는 등 서비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가맹점이 이 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은행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5. 가맹점에 1년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삭제)
 - 6. 가맹점이 부도, 파산, 회생절차신청, 폐업신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7. 가맹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민원발생 정도가 심각하거나 영업의 특성상 은행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가맹점이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30일전까지 가맹점에 통보 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삭제)

제 16 조 (양도금지 등)~제 19 조(신용정보 제공) (생략)

제15조(계약의 해지 등)

- ① 은행은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통지 후 가맹점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가맹점의 불량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되는 등 서비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가맹점이 이 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은행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삭제)
 - 5. 가맹점이 부도, 파산, 회생절차신청, 폐업신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6. 가맹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민원발생 정도가 심각하거나 영업의 특성상 은행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가맹점이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삭제)

제 16 조 (양도금지 등)~제 19 조(신용정보 제공) (좌동)

일방적인 계약 정지나 해지조항을 삭제하고
사전통지후 계약 정지나 해지하도록 개정함

5항 삭제로 6,7항이 5,6항으로 변경함

일방적인 계약 정지나 해지조항 삭제

제 20 조 (약관변경)

- 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에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적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그 내용을 가맹점에 개별 통지함과 동시에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적용 예정일 전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밖에는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립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경우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 ③ 은행은 가맹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결제원의 금융IC카드 공동업무규약, 모바일공동업무규약,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제22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신설)

제 20 조 (약관변경)

- 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에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적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그 내용을 가맹점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폰문자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함과 동시에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적용 예정일 전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밖에는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립니다. 본 통지나 게시에는 제2항의 취지를 명시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개별통지하거나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가맹점이 적용예정일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2. 가맹점이 제14조 제1항을 준수하지 않아 개별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 ③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맹점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1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결제원의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제22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가맹점 개별 통지시 매체를 확대하여 통지하도록 개정함

가맹점의 승인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금융IC카드 공동업무규약」과 「모바일공동업무규약」을 통합과 동시에 폐지 후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으로 명칭변경함